

재학생 [법정의무교육]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

안녕하십니까?

현행법에 의해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

본 교육은 **모든 재학생**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 과목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11월 30일까지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❖ 근거 : 현행법에 의거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

- 2020년 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 계획
-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
-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-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

❖ 수강 방법

순서	내 용
1	학교 홈페이지에서 e-Class 접속
2	로그인 - ID와 PASSWORD 입력
3	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대시보드 확인 → 공지사항 확인 → 수업콘텐츠 클릭하여 수강 </p>

- 구성 : 1주차 3차시, 총 15페이지로 구성
- 완료 기준 : 총 15페이지 수강하면 완료됨

❖ 문의 : 학생생활상담센터/양성평등상담실 (320-2194/2120)